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의료영상(CT, MRI) 외주판독 용역

2. **목적**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공백에 따른 의료영상 판독업무 수행에 대하여 원격영상 체계를 이용한 외주판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원활한 판독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에 관한 세부 이행 사항들을 규정한다.

3. **과업(계약)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4. **과업내역(의료영상 외주판독 대상)**: CT, MRI 예정수량(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 특수조건(고려사항)**

가. 이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및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외주판독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병원"이 요구한 의료영상 판독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탁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수행에 맞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판독 전문의 휴가나 부재 시에는 "병원"에게 사전협의하여 통지하고 대체 판독 전문의를 선정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판독이거나 진료에 차질을 준 판독일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판독 전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의료영상 판독용역 업무에 필요한 의료영상 저장 · 전송 및 판독 프로그램 체계를 판독 시작 이전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바. 의료영상 외주(원격)판독 용역계약 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료영상 판독 및 전송 등 시스템 구성 및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사. 외주(원격)판독은 정기판독과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
- 정기판독은 "병원"의 판독요청 후 외래는 48시간 이내 판독이 완료되어야 한다.
- 응급판독은 "병원"의 판독 요청 후 2시간 이내 판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 응급판독료 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로 하며, 산출금액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자.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하여 "병원"의 의료진과 "계약상대자"의 판독 전문의 간 정보교환 등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전화 혹은 E-mail 등)

차. 외주판독 요청 시 현재의 영상과 과거의 영상이 같이 전송되어 비교 판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기술적 준수사항(프로그램 기능 등)

가. 의료영상 외주(원격)판독을 위한 기관 간 영상 전송 시 압축 및 저장 · 전송 등의 방식(Protocol)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 DICOM 3.0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병원"의 의료영상 판독 요청 시 영상 저장 · 전송방식은 DICOM Sending, File Sending, HTTP/S방식 등이며, 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제품(프로그램)특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병원"의 판독요청 시 의료영상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해(Comment)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판독요청 후 판독 진행 상태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라. "병원"의 판독 요청된 모든 의료영상에 대한 요청 기관 및 판독 기관에서 판독 내역의 통계 조회기능 및 출력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마. 판독요청은 정기요청과 응급요청으로 구분한다.

바. 판독결과는 당원 PACS에 자동입력 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병원"의 판독요청 된 의료영상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영상판독 과정에서 응급을 요하는 질환 또는 의심되는 질환을 진단한 경우 즉시,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병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자. "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성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차. 환자리스트와 영상이 잘못조합(UnMatch)된 경우 ‘판독요청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영상전송 프로그램에서 판독이 불필요한(미 판독 상태) 영상에 대해 판독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타. "병원"이 판독요청 해지를 하면 "계약상대자"의 판독모니터 상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7. 사업수행 자격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 전문의 수가 20인 이상 이어야 함(전문의 자격증,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의사인력 등록 내역 제출)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의 의료 영상판독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자료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8.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시설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판독결과의

오류로 인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병원"은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마.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0. 검수기준

가. 검수 기준은 최초 판독완료 시간을 적용 한다.

나. 재 판독(동일영상 판독내용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판독료 추가 청구 불가

다. 판독료 지급은 판독 건수 및 판독료 지급요청에 따라 익월 이후 정산한다.

11. 원격판독 소요시간 기준

가. 원격판독 요청시간 : "병원"의 판독요청 의료영상이 "계약상대자"의 서버(Server)에 접수된 시간

나. 원격판독 완료 시간 : "계약상대자"의 판독결과가 "병원"의 서버(server)에 접수된 시간

다. 원격판독 소요 시간 : 원격판독 요청 시간에서 원격판독 완료 시간까지

12. "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 시간에 대한 기준

가. 평일 일반판독 : 09:00~18: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응급판독 : 09:00~17: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 09:00~12:00

나. 상기 기준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경우

- 평일 18:00분 이후부터 익일 09:00분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익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8:00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 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원격판독 소요시간 계산에 대한 기준

가. 일요일의 경우

토요일 12:00 이후부터 다음 근무일 09:00분까지의 일요일은 판독 소요시간에서 제외.

나. 공휴일의 경우

근무일 18:00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까지의 시간을 판독 소요시간에서 제외.